

# 요보호자 부양가족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Influential Factors on Utilization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Dependent Family Caregivers

전병주\*, 김건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yeong-Joo Jeon(okjbj@hanmail.net)\*, Keon-Ho Kim(kkh630828@hanmail.net)\*\*

### 요약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하였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제도 정착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적의 제도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Newman의 행동모델을 적용하여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SPSS 18.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의사는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M=3.08). 둘째,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욕구요인에서의 사회적 낙인, 가능요인에서의 경제상태, 선행요인에서의 부양자와의 관계, 교육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에게 제도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성년후견제도 | 사회적 낙인 | 행동모델 |

### Abstract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aken into effect in Korea 3 years ago, but as the system settlement is comparatively late than other countries, there is a need for specific countermeasure to actualize the optimized system.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subjecting the dependent family members of the disabled and dotard by applying the behavioral model suggested by Anderson & Newman. This study utilized SPSS 18.0 for analysis, an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intention to use adult guardianship system was average. Seco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f using adult guardianship system were social stigma among need factors, financial status among enabling factor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caregivers, and academic level among the predisposing factors. Based on such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vides with the fundamental references for early settlement and proper management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and proposed specific practical strategy necessary for the guardian and dependent family.

■ keyword : | Adult Guardianship System | Social Stigma | Behavioral Model |

## 1. 서론

한국에서 국내 모그룹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그룹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모 그룹에서 발생한 갈등과 대립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지만, 90세가 넘는 현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대한 의문도 주요 쟁점이었다. 현재 그룹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언론은 총괄회장의 의사능력에 따라 경영권과 인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갈등 국면에서 대두된 것이 성년후견제도이다.

한국에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개정을 통하여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미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여러 국가에서는 ‘질병과 장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가 필요한 고령자와 장애인(이하 요보호자)’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나 정상화 이념에 따라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요보호자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1]. 2015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각 법원에는 총 4,902건의 후견 관련사건이 접수되었다[2]. 이것은 제도 시행 후, 1년 동안 신청건수가 1,813건 이었던 점에 비추어 후견제도 이용 건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2016년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전국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후견업무와 상담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제도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전 인구의 1%에 상당하는 사람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3],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고 3년이 경과한 한국에서 제도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한편, 한국과 성년후견제도가 매우 유사한 일본에서는 2000년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첫 해에는 9,007건에서 성년후견인이 임명되었으며, 3년째에는 15,151건으로 증가하였다[4]. 이렇게 한국에서 제도 정착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년후견제도 성격 자체가 복·보·보 등 여러 영역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홍보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에 쉽게 접근하지 못

하고 있는 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 사회에서 가족문제는 폐쇄적인 유교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건강이나 재산문제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것도 제도의 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년후견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법조계, 사회복지계 등이 오랜 논의 끝에 도입한 성년후견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기본적으로 정책이란 경험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노력을 전제로 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제도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6].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공공후견업무와 권익옹호활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본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제도의 의의 내지 역사를 중심으로 법학영역에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성년후견제도의 기능과 해외 제도를 소개하는 등 보다 다양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5][7][8]. 하지만, 성년후견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실증적인 연구는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영규(2016) 연구[9]에서 제도의 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법률적 문제에 국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제철용 외(2015) 연구[10]에서는 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는 집단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표·송승연 연구[22]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조사대상군을 선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애인,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Anderson & Newman(1973) [11] 행동모델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이 모델은 보건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도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외 복지서비스 이용에 대한 다

양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12][14].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 가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마련하며, 성년후견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한국에서는 2011년 3월 민법이 개정되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2013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sup>1)</sup>. 이를 통해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확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한 것과 비교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도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여 후견 이용을 보다 내실화하였다. 또한, 질병과 장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성년후견 등을 요구하는 요보호자에 대한 신상보호 규정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를 도모하고, 피성년후견인과 거래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성년후견 등에 관하여 등기로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13].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3년이 경과하면서, 정부는 각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 각 지역의 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교육·직업·문화·복지서비스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후견업무 지원과 상담업무를 수행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매노인과 독거노인은 서비스 결정과 이용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공식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1] 성년후견제도에서의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후견서비스 등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활성화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 Newman의 행동모델을 이용하여 제도 이용의 예측요인을 탐색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여러 유형의 서비스 이용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유용한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14][15]. 실제로 이 분석틀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정신건강과 노인복지서비스 등 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도 그 유용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14][16].

Anderson 모델은 1960년대 후반 의료서비스 이용에서의 예측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등장한 이후로 현재까지 의료와 복지서비스 이용 분석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17]. 이후, Anderson 모델은 사회서비스 이용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차별과 낙인, 개인의 신념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18], 이것을 보완한 Anderson & Newman(1973)[11] 행동모델은 개인 내·외적 요인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인으로 포괄적인 이해를 시도할 수 있고,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의 의사결정 설명에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17]. 더욱이 행동모델은 인과성의 이론적 연속성(theoretical sequence of causality)을 내포하고 있다[19]는 점에서 본 연구목적 검증에 보다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Anderson & Newman의 행동모델을 적용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현황을 분석한 유혜숙·전동일(2008)[20] 연구에서는 선행요인에서 성별, 나이, 장애유형, 가능요인에서 배우자 유무, 가구소득, 본인이 인식하는 차별정도 그리고 욕구요인에서 건강상태, 교통수단 이용에서의 어려움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성년후견'(민법 제9조), 동일한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한정후견'(동법 제12조), 동일한 이유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정후견'(동법 제14조의2)을 개시하게 된다.

인을 분석한 강우진·박경숙(2011)[21] 연구에서는 선행 요인에서 시각장애인의 학력, 가능요인에서 직업 유무, 욕구요인에서 장애등급, 주부양자의 돌봄 기간과 신체적 부양부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인지재활서비스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김솔잎·이동영(2016)[23] 연구는 선행요인에서 가족지지, 가능요인에서 서비스 필요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욕구요인에서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부양자의 재가서비스 이용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송다영(2003)[15] 연구에서는 선행요인에서 부양자와 노인 간의 우애관계, 노인부양 가치관, 가능요인에서 타 가족으로부터의 노인부양 연관 경제적 지원 정도, 욕구요인에서 경제적 부담, 가족 내 추가로 돌봐야 할 가족원 유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표·송승연 연구[22]에서는 가구월평균 소득과 제3자에 의한 돌봄욕구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조은영·김순규(2013)[14] 연구에서는 선행요인에서 서비스 이용태도와 낙인감, 가능요인에서 사회적 지지, 욕구요인에서 인식된 욕구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현장에서의 서비스 이용 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한 정연정(2010)[12]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Anderson & Newman의 행동모델을 이용한 선행연구들은 연구목적에 따라 변수를 적절히 수정하고 보완하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목적에 맞도록 일부 변수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은 독립변수로 설정한 선행·가능·욕구요인 등의 3개 요인과 종속변수인 성년후견제도 이용 의사 간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이다.

$$Y = \beta_1\delta_1 + \beta_2\delta_2 + \beta_3\delta_3$$

(Y=이용 의사,  $\delta_1$ =선행요인,  $\delta_2$ =가능요인,  $\delta_3$ =욕구요인,  $\beta_i$ =회귀계수)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충남·북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협조를 통해 임의표집과 눈덩이표집 방법으로 조사대상자를 확보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2월~3월이었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410부를 배포하여 326부가 회수(회수율: 79.5%) 되었으며, 응답이 불성실한 것을 제외한 3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용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5점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정도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년후견제도 이용 의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수에서의 선행요인은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부양자와의 관계로 구성하였다. 성별은 남성 0, 여성 1로 코딩한 명목변수를 사용하였고, 연령은 생활연령(chronological age)을 측정하였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1)에서부터 대학원 재학 이상(5)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거주 지역은 시(0), 군(1)으로 코딩하였다. 부양자와 요보호자와의 관계는 자녀 0, 부모 1로 코딩한 명목변수를 사용하였다. 가능요인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 부양기간으로 구성하였다. 경제상태에 대해 '매우 좋지 않다(1)'에서 '매우 좋다(5)'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부양기간은 장애 또는 치매 후 부양한 기간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욕구요인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인식, 제도 필요성으로 구성하였다. 여기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5)'까지의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에 포함된 주요 변수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를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여기서는 여러 요인에 대한 상호통제가 가능하고, 요인 간 상대적 영향력을 확인하는데 유용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24].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선행요인·가능요인·욕구요인의 특성 및 그 수준은 다음 [표 1]과 같다. 우선, 조사대상자들의 선행요인에서 성별에 대해 살펴보면, 남성 162명(51.6%) 이었고, 여성 152명(48.4%)이었다. 연령은 '50세 이상~60세 미만'이 80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40세 이상~50세 미만'이 79명(26.2%)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85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학(2년제) 졸업'이 77명(25.2%)이었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이 30명(9.8%)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지역은 시 지역이 158명(51.0%)으로 더 많았으며, 부양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가 182명(59.9%) 이었고, 부양자의 자녀인 경우가 122명(40.1%)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능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상태는 '대체로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4명(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 72명(23.3%)이었으며, '매우 좋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5명(11.3%)으로 나타났다. 장애 또는 치매 후 부양할 기간은 '10년 이상~20년 미만'이 94명(30.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5년 이상~10년 미만' 68명(22.0%)이었으며, '3년 미만'은 30명(9.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들의 욕구요인에 대해서 살펴보

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 낙인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3명(26.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79명(25.4%)이었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52명(16.7%)으로 나타났다.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91명(29.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4명(20.9%)이었으며, '대체로 그렇다'라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                        |                      | 구분            | N          | %          |  |
|------------------------|----------------------|---------------|------------|------------|--|
| 선행<br>요인               | 성별<br>(n=314)        | 남성            | 162        | 51.6       |  |
|                        |                      | 여성            | 152        | 48.4       |  |
|                        | 연령<br>(n=302)        | 30세 이상~40세 미만 | 68         | 22.5       |  |
|                        |                      | 40세 이상~50세 미만 | 79         | 26.2       |  |
|                        |                      | 50세 이상~60세 미만 | 80         | 26.5       |  |
|                        |                      | 60세 이상~70세 미만 | 41         | 13.6       |  |
|                        |                      | 70세 이상        | 34         | 11.3       |  |
|                        | 교육수준<br>(n=306)      | 중학교 졸업 이하     | 48         | 15.7       |  |
|                        |                      | 고등학교 졸업       | 85         | 27.8       |  |
|                        |                      | 대학(2년제) 졸업    | 77         | 25.2       |  |
| 대학교 졸업                 |                      | 66            | 21.6       |            |  |
| 거주 지역<br>(n=310)       | 군                    | 152           | 49.0       |            |  |
|                        | 시                    | 158           | 51.0       |            |  |
| 부양자와의<br>관계<br>(n=304) | 부모                   | 182           | 59.9       |            |  |
|                        | 자녀                   | 122           | 40.1       |            |  |
| 가능<br>요인               | 경제상태<br>(n=309)      | 매우 좋지 않다      | 53         | 17.2       |  |
|                        |                      | 대체로 좋지 않다     | 94         | 30.4       |  |
|                        |                      | 보통이다          | 72         | 23.3       |  |
|                        |                      | 대체로 좋다        | 55         | 17.8       |  |
|                        |                      | 매우 좋다         | 35         | 11.3       |  |
| 부양기간<br>(n=309)        | 3년 미만                | 30            | 9.7        |            |  |
|                        | 3년 이상~5년 미만          | 56            | 18.1       |            |  |
|                        | 5년 이상~10년 미만         | 68            | 22.0       |            |  |
|                        | 10년 이상~20년 미만        | 94            | 30.4       |            |  |
|                        | 20년 이상               | 61            | 19.7       |            |  |
| 욕구<br>요인               | 사회적<br>낙인<br>(n=311) | 전혀 그렇지 않다     | 44         | 14.1       |  |
|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53         | 17.0       |  |
|                        |                      | 보통이다          | 83         | 26.7       |  |
|                        |                      | 대체로 그렇다       | 79         | 25.4       |  |
|                        |                      | 매우 그렇다        | 52         | 16.7       |  |
|                        |                      |               | M(SD)      | 3.13(1.28) |  |
|                        | 제도<br>필요성<br>(n=306) | 전혀 그렇지 않다     | 56         | 18.3       |  |
|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91         | 29.7       |  |
|                        |                      | 보통이다          | 64         | 20.9       |  |
|                        |                      | 대체로 그렇다       | 53         | 17.3       |  |
| 매우 그렇다                 |                      | 42            | 13.7       |            |  |
|                        |                      | M(SD)         | 2.78(1.30) |            |  |
| 제도 이용<br>(n=310)       | 전혀 그렇지 않다            | 43            | 13.9       |            |  |
|                        | 대체로 그렇지 않다           | 64            | 20.6       |            |  |
|                        | 보통이다                 | 82            | 26.5       |            |  |
|                        | 대체로 그렇다              | 66            | 21.3       |            |  |
|                        | 매우 그렇다               | 55            | 17.7       |            |  |
|                        |                      | M(SD)         | 3.08(1.29) |            |  |

고 응답한 경우가 53명(17.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의사를 조사한 결과, 본 제도에 대한 이용 의사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2명(26.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66명(21.3%)으로 나타났다.

###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의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우선, 선행요인에서의 교육수준( $r=.220, p<.01$ )은 성년후견제도 이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 $r=-.114, p<.05$ )과 부양자와의 관계( $r=-.289, p<.01$ )는 성년후견제도 이용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요인에서의 주관적인 경제상태( $r=.337, p<.01$ )와 부양한 기간( $r=.187, p<.01$ )은 성년후견제도 이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욕구요인에서의 사회적 낙인( $r=-.394, p<.01$ )은 성년후견제도 이용과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도의 필요성( $r=.140, p<.05$ )은 성년후견제도 이용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요보호자가 자녀인 경우,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경제상태가 양호할수록, 부양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적 낙인을 적게 인식할수록, 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다.

### 3.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모델 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 지역, 부양자와 관계 등의 선행요인들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모델 II에서는 모델 I에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상태, 장애 또는 치매 후 부양기간 등의 가능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모델 III에서는 모델 II에 사회적 낙인, 제도 필요성 등의 욕구요인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값을 확인한 결과 모두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각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I에서는 교육수준( $p<.001$ ), 거주 지역( $p<.01$ ), 부양자와의 관계( $p<.001$ ) 등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 모델의 설명력은 12.3%로 나타났다. 모델 II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이 인식하는 주관적인 경제상태( $p<.001$ ), 장애 또는 치매 후 부양기간( $p<.01$ )이 추가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에서 10.1% 유의미하게 증가한 21.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델 III에서는 사회적 낙인( $p<.001$ ), 제도 필요성( $p<.05$ )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모델의 설명력은 모델 II에서 13.3% 증가한 35.1%로 나타났다( $F=17.290, p<.001$ ).

즉,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자들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를 살펴본 결과, 사회적 낙인( $\beta=-.335, p<.001$ ), 경제적 상태( $\beta=.262, p<.001$ ), 부양자와의 관계( $\beta=-.212, p<.001$ ), 교육수준( $\beta=.167, p<.01$ )으로 나타나 이런 요인들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 구분        | 성별   | 연령    | 교육 수준  | 거주 지역  | 부양자와의 관계 | 경제 상태  | 부양 기간  | 사회적 낙인  | 제도 필요성 |
|-----------|------|-------|--------|--------|----------|--------|--------|---------|--------|
| 성년후견제도 이용 | .043 | -.062 | .220** | -.114* | -.289**  | .337** | .187** | -.394** | .140*  |

\* $p<.05$ , \*\* $p<.01$

표 3.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구분                 |          | 모델 I     |           | 모델 II     |           | 모델 III    |           |       |
|--------------------|----------|----------|-----------|-----------|-----------|-----------|-----------|-------|
|                    |          | $\beta$  | t         | $\beta$   | t         | $\beta$   | t         | VIF   |
| 선행<br>요인           | 성별       | .056     | .967      | .038      | .687      | .022      | .434      | 1.067 |
|                    | 연령       | .029     | .491      | .053      | .960      | .032      | .638      | 1.056 |
|                    | 교육수준     | .204     | 3.569***  | .181      | 3.339***  | .167      | 3.382**   | 1.021 |
|                    | 거주 지역    | -.125    | -2.091**  | -.116     | -1.947*   | -.120     | -2.355*   | 1.186 |
|                    | 부양자와의 관계 | -.254    | -4.386*** | -.246     | -4.502*** | -.212     | -4.218*** | 1.052 |
| 가능<br>요인           | 경제상태     |          |           | .281      | 5.126***  | .262      | 5.149***  | 1.083 |
|                    | 부양 기간    |          |           | .129      | 2.379**   | .126      | 2.492**   | 1.250 |
| 욕구<br>요인           | 사회적 낙인   |          |           |           |           | -.335     | -6.653*** | 1.284 |
|                    | 제도의 필요성  |          |           |           |           | .119      | 2.322*    | 1.169 |
| R <sup>2</sup>     |          | .139     |           | .240      |           | .373      |           |       |
| 수정된 R <sup>2</sup> |          | .123     |           | .219      |           | .351      |           |       |
| R <sup>2</sup> 변화량 |          |          |           | .101***   |           | .133***   |           |       |
| F                  |          | 8.532*** |           | 11.887*** |           | 17.290*** |           |       |

더미변수: 성별(남=0), 거주지역(시 지역=0), 부양자와의 관계(자녀=0)  
\*p<.05, \*\*p<.01, \*\*\*p<.001

### V.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예측에 적합하다[12][14][17]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Anderson & Newman(1973)[11] 행동모델을 분석틀로 활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선행요인·가능요인·욕구요인을 투입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요보호자를 부양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욕구요인에서의 사회적 낙인, 가능요인에서의 경제상태, 선행요인에서의 부양자와의 관계, 교육수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사대상자들의 거주 지역, 부양 기간, 제도의 필요성 인식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는 요보호자의 부양가족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가장 크게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은 성년후견제도가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이용할 의사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M=3.08).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사회적으로 부정적 시선이 있어 제도 이용을 회피하게 된다는 비판[1]이 있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조사대상자들은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은 낮게 인식하면서

(M=2.78) 사회적 낙인에서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3.13). 또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제도 이용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다양한 매체가 보급되는 도시 지역에서 제도에 대한 이용 의사가 더 높다는 결과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적 홍보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더욱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은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부정된 인식을 줄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누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요보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성년후견제도에서 중요한 전문 성년후견인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요보호자를 부양하는 가족의 경제상태가 제도 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발달장애 인지원센터를 통해 공공후견과 상담업무를 실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후견신청 비용을 지원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장애 또는 치매발병 후 부양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가족에 의한 요보호자 돌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요보호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므로 가족만에 의한 돌봄이 아니라 ‘돌봄의 사회화’가 더욱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력을 지닌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 성년후견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후견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요구되며, 이런 전담기구를 통해 후견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천적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국민적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의 홍보 내용은 제도의 취지와 성격 뿐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정책들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필요성 및 이해를 높이고, 요보호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 누구나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요보호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을 확보해야 한다. 본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요보호자들은 전국 어디서나 전문가 성년후견인 또는 시민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지역, 경제적 상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로 정착할 것이다.

셋째, 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성년후견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전담기구는 중앙과 각 지역의 발달 장애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거나, 이 기구를 통합하여 보다 포괄적인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성년후견제도의 성격 자체가 복지·법·보건 등의 여러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 보건기관뿐만 아니라 사법부와의 연계와 협력이 중요하며, 중앙과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들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3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요보호자들의 이용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정신장애인이 생애주기별로 직면하는 삶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다양한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그들

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고, 정부에서도 후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요보호자들의 권리옹호를 위해 각 지역에 발달 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요보호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실증적 분석결과를 실시함으로써 성년후견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으며, 요보호자와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일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치매노인 등 요보호자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주의를 요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심각하게 고립되거나 소외되어 지역 자원 내지 지역사회와 교류가 없는 요보호자들이 존재하므로 그들을 포함한 연구가 진행되거나, 장애인과 치매노인들을 나누어 비교연구를 진행하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후속연구에서 실천해 보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1] 전병주, 최은영, “고령화 사회에 있어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실태 및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pp.381-413, 2013.
- [2] 대법원, 성년후견제도 현황, 대법원, 2016.
- [3] 전병주, 김건호, “일본 성년후견인의 유형 동향과 한국에의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집, 제13권, 제4호, pp.187-197, 2013.
- [4] 最高裁判所, 成年後見關係事件の概況, 2016.
- [5] 최수정, “고령사회에서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법조, 제64권, 제3호, pp.36-69, 2015.
- [6] 최은영, 김정석, “최근 사회노년학의 연구동향,” 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1호, pp.165-185, 2012.
- [7] 김명업, “취약계층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개선방향,” 한양법학, 제26권, 제1호, 181-197, 2015.
- [8] 이부하, “헌법상 정신적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pp.295-313, 2015.

[9] 이영규,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과제,” 일감법학, 제33권, pp.245-273, 2016.

[10] 제철용, 최윤영, 유혜인, “공공후견인의 직무분석과 그 시사점,” 비교사법, 제23권, 제2호, pp.651-686, 2016.

[11] R. M. Anderson and J. F. Newman,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51, pp.95-124, 1973.

[12] 정연정, “교육복지 실천현장에서 서비스 이용행동을 결정하는 요인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제31권, pp.7-37, 2009.

[13]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7209)*, 법무부, 2009.

[14] 조은영, 김순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교사회복지, 제25권, pp.1-23, 2013.

[15] 송다영, “가족부양자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3권, pp.105-128, 2003.

[16] M. J. Penning, “Health and Social Support, and the Utilization of health Services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y, Vol.50, No.5, pp.330-339, 1995.

[17] 김성용, 강상경, “정신장애인 사회서비스 이용의 예측요인,” 사회복지연구, 제45권, 제1호, pp.175-202, 2014.

[18] 민소영, “지역거주 정신장애인을 위한 공식 및 비공식 지원 간의 상호관계와 영향요인,”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1권, pp.5-31, 2013.

[19] O. M. Baik, “Factors associated with functional health outcomes in community-dwelling older adul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38, pp.1-27, 2011.

[20] 유해숙, 전동일,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 현황과 요인,” 재활복지, 제12권, 제1호, pp.1-17, 2008.

[21] 강우진, 박경숙, “시각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제31

권, 제2호, pp.146-179, 2011.

[22] 이용표, 송승연,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년후견제도 이용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6호, pp.334-344, 2016.

[23] 김솔잎, 이동영, “치매노인의 인지재활서비스 이용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제18권, pp.1-27, 2016.

[24] 이동영, 박종두, “재가독거노인의 건강증진프로그램 참여의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8권, 제4호, pp.1-23, 2011.

저 자 소 개

전 병 주(Byeong-Joo Jeon)

정회원



- 2002년 8월 : 동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2009년 8월 : 충북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 2014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박사)

<관심분야> : 사회보장, 보건의료, 노인복지

김 건 호(Keon-Ho Kim)

정회원



- 1986년 2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1995년 3월 : 변호사
- 1998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2006년 3월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심분야> : 법조윤리, 민사소송, 도산